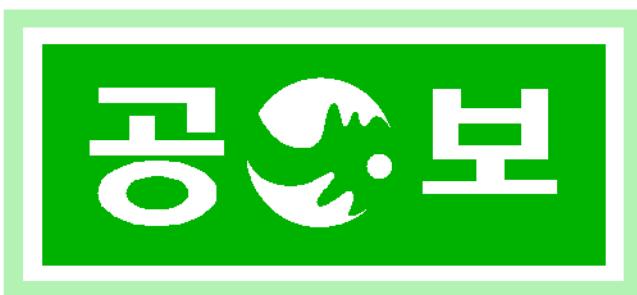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판 의 장



제 686 호 2011. 4. 4(월)

조 레

- 울산광역시북구규칙 제593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울산광역시북구규칙 제594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문화홍보과(☎219-7207 행정720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11년 4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9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 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하여 의장이 위원장 1인, 단, 심사위원 중 반드시 1명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연수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심사기준 강화” 권고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구현을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위원 비율 확대

1/3 → 과반수(제4조 제3항)

나.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 강화

과반수 → 3분의2(제6조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충오


2011년 4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9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00·7·31, 07·0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탐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

제1차 정례회 기간 → 제2차 정례회 기간(제2조 제2항)